

1. 개정이유

추가합격 제도를 신설하고,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을 위관 장교 전체로 확대하며, 필기시험 문항 수를 줄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제도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 확대(안 제5조, 별표2)

- 1)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은 대위, 부사관, 준사관으로 부사관은 전체계급을 포함하나, 위관장교는 대위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2) 장교의 6급 이하 응시 가능 계급을 대위에서 위관장교로 확대하여, 중위 이하 위관장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중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대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3)

- 1) 응시원서 구비서류 목록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기본증명서만 확인
- 2) 응시자 확인을 위한 중복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는 제출목록에서 제외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민감정보 수집을 최소화

다.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변경(안 제8조)

- 1) 응시수수료 일부 반환기준인 체력검정을 국민체력인증제로 시행함에 따라 체력검정 시행일을 특정하기 곤란
- 2)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자의 변심 등으로 응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

라. 체력검정 기준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 1) 체력검정 합격기준을 국민체력인증 체력검사 6개 항목별 3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동체력항목(민첩성, 순발력)의 경우 3등급 기준이 없어 평가항목에서 제외
- 2) 체력검사항목 중 건강체력항목(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별 3등급으로 합격기준을 개정하고, 체력검정 인증결과의 인정기간을 구체화하여 응시생의 혼란 방지

마. 필기시험 문항 수 및 문항당 배점 조정(안 제14조, 별표4)

- 1) 시험과목의 출제범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문제의 질과 난이도 관리가 곤란하고, 고난도 문항으로 인해 응시자의 필기시험 부담 가중
- 2) 문항 수를 줄이되 문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문항당 배점을 일원화하여 난이도 평준화로 응시자의 부담 완화

바. 현역복무실적 평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 1) 현역신분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평정 결과를 적용

하도록 근무평정 점수 적용기준을 마련

2)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 누락된 군수지원사령부 동원과, 여단 예비군훈련대(TF포함) 등을 포함

3)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체는 성적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사. 추가합격 제도 신설 등(안 제17조)

1)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응시 가능 계급별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2) 최종합격자의 임용 의사를 확인하고,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임용예정자를 관리하기 위해 합격자를 등록하여 관리

3) 동점자 결정시 군 복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한 사람을 선발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현역 복무시 평가가 우수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현역 근무평정 점수와 심의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우수자를 우선순위에 추가하고, 동원·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대신 별표7의2의 가점자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접수기간과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력검사항목에서 각 항목별로”를 “건강체력항목에서”로, “(제9조제1항제3호의 면접시험일부터 6개월 이내)”를 “(전반기 시험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2월말, 하반기 시험은 당해연도 1월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기준”을 “기준(현역일 경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장기근속자, 동원”을 “장기근속자, 현역 근무평정 점수와 심의평가점수의 합산점수 우수자, 동원”으로, “분야 장기근속자”를 “관련부서 근무경력 가점자(별표7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고한 기한 내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 가능 계급별로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임용 예정일 전까지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가합격으로 임용 전 교육 이수가 불가할 경우 임용 후 6개월 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계 급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여단장·연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군인사법」 제41조제2호) 대령
	대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군인사법」 제41조제2호) 중령
	지역중대장 및 직장중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군인사법」 제41조제2호) 소령
예비전력	일반군무원 5급	예비역 또는 퇴역(「군인사법」 제41조제2호) 소령
관리기구	일반군무원 6급 이하	예비역 또는 퇴역(「군인사법」 제41조제2호) 위관장교·준사관·부사관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1부
--------------	----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최근”을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는 원서접수일 전”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4호 중 “100문항이며”를 “80문항이며”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0.3점부터 0.5점까지”를 “0.5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예비군연대장 나.의 보직경력란 나목 중 “안보지원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707부대”를 “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777사령부”로, “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안보지원부대장”을 “방첩부대장”으로, “제3707부대의”를 “777사령부의”로 하고, 같은 호 예비군대대장/예비군훈련대장/4급 나.의 보직경력란 나목 중 “안보지원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707부대”를 “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777사령부”로, “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안보지원부대장 또는 지역안보지원분견대장”을 “방첩부대장 또는 지역방첩부대분견대장”으로, “제3707부대의”를 “777사령부의”로 하고, 같은 호 예비군중대장/5급 다.의 보직경력란 다목 중 “안보지원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707부대”를 “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777사령부”로, “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에는 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에는 방첩부대”로, “제3707부대의”를 “777사령부의”로 하며, 같은 란의 예비군 중대장 /5급 “라”를 “가”로 하고, 같은 호 6급 이하 가.의 보직경력란 가목 중 “대위”를 “위관장교”로 한다.

별표 7의2의 육군의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지상작전사령부: 자원동원과, 예비군과
- 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
- 수도방위사령부: 동원참모처

- 군단: 동원참모처, 동원과
- 특수전사령부: 동원과
-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참모처, 동원지원단, 동원자원호송단, 예비전력교육단
- 사단: 동원참모처, 예비군훈련대, 예비군감사실
- 여단/연대: 동원과, 예비군훈련대(TF포함)
- 대대: 동원과
- 군수지원사령부, 군수지원여단, 군수지원단: 동원과
- 구(舊) 1·3군사령부: 동원참모처
- 구(舊) 학생군사학교: 동원학부

별표 7의2의 해군(해병을 포함한다)의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군본부: 예비전력차장 소속과
- 작전사령부: 동원과
- 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진해기지사령부: 동원예비군과, 예비군관리대
- 해병대사령부: 동원예비군과
- 사단: 동원참모실, 예비군관리대, 제16해병연대
- 여단: 동원참모실
- 군수단본부: 동원과
- 교육훈련단: 동원예비군과, 동원지원단
- 구(舊) 교육훈련단: 제16예비군관리대

별표 9 중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한 인증등급만 인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인증결과 인정
기간과 별표4 개정규정은 2024년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③ (생략)

제12조(체력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의 체력검사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모두 3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제9조제1항제3호의 면접시험일부터 6개월 이내의 인증 결과만 인정한다) 합격으로 처리한다.

③ (생략)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생략)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또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접수기간과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체력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건강체력항목에서

----- (전반기 시험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2월 말, 하반기 시험은 당해연도 1월부터 8월말까지)-----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준(현역일 경우 응
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③ ~ ⑨ (생 략)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
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
자, 동원 및 예비군 분야 장기근
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기근속자,
현역 근무평정 점수와 심의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우수자, 동원
--- 관련부서 근무경력 가점자
(별표7의2)---.

③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
발시험 합격자는 시험 실시기관
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고한
기한 내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
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본다.

④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인원에 결
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
시기관의 장은 응시 가능 계급
별로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임용예정일
전까지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임용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 . 다만, 추가합격으로
임용 전 교육 이수가 불가할 경우 임용 후 6개월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